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Counter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Databases

안계성(Gye-Sung Ahn)*, 조소연(So-Youn Cho)**

목 차

1 서 론	4.1 입법 형식
2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4.2 보호 형태
2.1 배경	4.3 보호 대상
2.2 문제 제기	4.4 권리 내용
3 외국의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 동향	4.5 보호 제한
3.1 유럽	4.6 보호 기간
3.2 미국	4.7 공공기관 제작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3.3 일본	5 결 론
4 데이터베이스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초 록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문제가 제기되자 세계 각국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및 최근 선진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보호 대응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legal protection issues of databases are rising to the surface. This study presents the adequacy of copyright protection for databases and gives the overview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additional database protection. Finally, this paper makes recommendations on the legal protection countermeasure for the domestic database industry growth.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정보조사과 과장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연구원

■ 논문 접수일 : 1999년 5월 10일

1 서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부문에 산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가공·축적하여 여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 기업, 국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고, 정보처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며,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 이용의 활성화는 관련 정보·저작물의 제작·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식 기반 산업 및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정보 환경, 국가 경쟁력을 진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는 그 특성상 불법 복제·유통이 상당히 용이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 제작에는 시스템 기획·구축, 정보의 수집·정리·가공·입력 등 상당한 인적·재정적·시간적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이미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복제하여(재)이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최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투자된 막대한 제작비용을 정보 이용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무단 이용 행위 혹은 무단 이용된 정보의 불법 가공을 통한 부당 경쟁 행위 등을 통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및 투자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국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

게 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보호하는 법적 체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선택·배열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데이터베이스 관련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법상 보호 요건인 창작성의 유무 판단이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이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된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선진 각국은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비롯하여 이미 영국, 독일 등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였으며 미국 등 기타 국가들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규정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침해를 적절히 규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보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정보 거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법적 보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선진 각국에서 마련하

였거나 마련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호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법상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점이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하는지, 보호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2.1 배경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문제는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모색하였고, 국내외적인 논의를 거쳐 대체적으로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 규정이나 유사한 별도 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체계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즉 데이터베이스 보호 기준으로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독창성(창작성)'을 기본 개념으로 삼았다.

미국은 1980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별도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기존의 편집저작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저작물 규정에 의해 보호받도록 하였다.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편집저작물이란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를 수집, 조합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그러한 자료나 데이터를 선택, 정리 또는 배열하여 생겨난 저작물 자체가 독창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1986년 저작권법 개정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신설하였다. 초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

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보호와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를 집약화하여 컴퓨터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해졌다(성진영 1994).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갖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데이터베이스 별도 보호 규정이 마련되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기타 다수 국가들은 저작권법상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저작물처럼 독창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UR/Trips 및 WIPO 저작권 조약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법적인 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기준을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독창성으로 규정하는 종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4년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명시적으로 법조문화되었다. 이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에서 편집저작물을 '논문, 수취,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편집저작물의 개념 정의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명문화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에 속함을 분명히 하고, 편집저작물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역시 편집저작물의 보호 요건인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을 만족한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2.2 문제 제기

데이터베이스는 전세계적으로 저작권법상 편집 저작물 규정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별도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베이스 보호 여부를 결정짓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독창성(창작성)'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2.1 보호 요건의 적합성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독창성 혹은 창작성의 기준 설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독창성은 그 용어의 추상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기준 설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판단주체에 따라 독창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데이터베이스 침해에 대한 관련 판례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사안별로 독창성 여부의 결과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의 좋은 예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각국별로 독창성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리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향후 EU내에서의 원활한 데이터베이스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되어 EU내의 일률적인 보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U.S. Copyright Office 1997, 42-44).

한편 독창성의 기준 설정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보호 기준으로서의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독창성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일반 편집물과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독창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컴퓨터를 통하여 정보의 검색, 처리, 가공, 축적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점에 그 특징이 있으므로(양영준 1990, 35)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그 자체에 독창성이 없거나 중요성을 두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결론은 과연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데이터베이스 보호 기준으로 적절한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차별화를 위한 가치 판단 기준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을 낳게 되었다.

실제 내용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데이터의 배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정보의 수집은 망라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재의 선택은 동일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일 경우 유사할 수밖에 없다(신각철 1996, 62). 따라서 경우에 따라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입력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투여되는 노력, 비용이 타인에 의해 부당히 훼손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정보의 추출 및 이용의 금지 여부

비록 창작성의 기준을 상당히 낮춤으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추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보호하는 근거는 저작자의 창작성에 기인하며, 따라서 보호 대상은 창작성이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해석됨이 일반적이다(이상정 1997, 24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기준으로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는 곧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근거가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대상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라고 해석함이 옳은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을 모방하지 않았다면 정보의 내용이 동일하여도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는 미국의 파이스트(Fiest)판결에서도 보여지는데, 법원은 '경쟁관계에 있는 편집 저작물이 동일한 선택, 배열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사실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침해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이 선택과 배열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물론 기존의 우리나라 판례에서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편집저작물에 축적된 개개의 정보를 보호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일 경우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9.12.28. 선고 79도 1482 판결)라고 함으로써 도형 각각에 대한 보호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최근의 입찰정보 사건(서울지방법원 98가합 1699 결정)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저

작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정보 무단 복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복제 행위가 제재를 받아야 함은 마땅한 일이나 현행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보 추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법 해석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추출하거나 재이용하는 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2.3 보호기간

현재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선진 외국의 경우 70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단체명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단체명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공표 후부터 50년간의 보호기간을 갖게 된다.

보호의 대상이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일 경우에는 제작자의 지적인 창작에 대한 보상으로 타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보호기간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만일 보호대상이 정보의 추출 및 이용행위일 경우에는 장기간의 보호기간 부여가 정보의 독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어 원정보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 정보의 추출 및 이용행위에 대해 50년간 장기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사실상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과잉보호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 디지털화의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작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는 충분한 투자 회수의 기

간을 부여하되,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재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외국의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 동향

3.1 유럽

유럽은 1996년에 EU 데이터베이스지침(EC 1996)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법 이외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그 제작에 상당한 투자가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라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은 유럽 각국으로 하여금 1998년 이후 국내법에 의해 본 내용이 시행되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이미 영국, 독일 등이 국내법을 정비하여 이 지침을 수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법 이외의 추가적인 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3.1.1 1996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EU 지침(Directive)은 EU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입법적 조치를 지시하는 EU법의 한 형식을 가리킨다.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 각각의 국내법을 통해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에 근거하고 있다.

EU 각국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정적이고 통일된 법적 보호제도를 도

입하지 않으면 EU 역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낙후될 것이라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EU 각국에서는 EU내의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결국 1996년에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U.S. Copyright Office 1997, 42-44).

이 지침은 데이터베이스 보호 방안으로 2가지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한 저작권에 의한 보호이고, 다른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특별권(sui generis right)에 의한 보호이다.

EU 지침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그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권 형식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었다. 지침 제7조 1항에 의하면 '회원국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취득, 검증 또는 표현에 대하여 양적으로 그리고/또는 질적으로 실질적(substantial) 투자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양적으로 그리고/또는 질적으로 실질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의 추출(extract) 그리고/또는 재이용(re-use)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조문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만이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며 비실질적인 부분은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단, 비실질적인 부분의 반복적·체계적 추출과 재이용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할 경우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 지침상의 특별권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완성일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15년이 되는 해의 말까지 존속한다. 한편 보호 기간의 만료 전에 질적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투자라고 인정될 만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은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기산된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기간에 제한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호 방안을 마련한 것은 EU가 최초이며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각국의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3.1.2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국내법상 적용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유럽 각국으로 하여금 지침 내용을 국내법상에 수용하여 1998년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각국은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및 권리에 대한 규칙(The Copyright and Right in Database Regulations 1997)' 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은 1996년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규정을 국내법상 실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EU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소재 정보를 불공정하게 추출, 재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새로운 재산권적 보호(데이터베이스권)의 2가지 유형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1997년 6월 13일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내용의 유통을 규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s-Gesetz, 일명 IuKDG)' 을 통과시켰다. 동법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상의 내용물 규제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의 업계와 각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박은아 1997). 한편 정보통신서비스법 제7장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을 다루었는데,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1996년 채택된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상의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베이스 정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권리 제한, 존속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상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정 마련의 의무를 기존 저작권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 변경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영국이 EU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출, 재이용 금지권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한 것과는 달리, 독일의 개정법은 기존 저작권법상의 복제, 배포, 공중 전달의 권리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존 저작권법상의 권리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3.2 미국

미국은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하나는 편집자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의 초점으로 삼는 소위 '이마의 땀'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편집물을 구성함에 있어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대한 편집자의 판단과 창작성에 초점을 맞추는 독창성 주장 이론이다(U.S. Copyright Office 1997).

1980년 저작권법 개정시 편집저작물에 대해 '편집저작물이란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를 수집, 조합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그러한 자료나 데이터를 선택, 정리 또는 배열하여 생겨난 저작

물 자체가 독창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독창성 주장이론이 받아들여진 듯 하였으나 실무상 여전히 '이마의 땀' 이론을 고수한 판례들이 적지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태도는 1991년 대법원의 파이스트 판결에 의해 '이마의 땀' 이론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즉 파이스트 판결에서는 편집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 정리, 혹은 배열에 창작성을 보여야 하며, 단순히 노력과 투자가 있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사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편집 저작물 보호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대다수의 편집자들 특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로 하여금 편집저작물 보호의 적합성에 의심을 갖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파이스트 판결은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범위에 대해서 기존의 광범위한 보호 형태에 대해 일침을 가하였다. 즉 사실 정보에 대한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매우 좁다고 보았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편집저작물이 동일한 선택, 배열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사실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침해할 구성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국 보호의 대상은 소재의 선택, 정리, 배열의 독창성 그 자체이지 소재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저작권이 인정된 편집저작물에서 중요부분을 추출하는 것을 침해로 보았고 제2의 제작자에게 독자적으로 소재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던 기존 판례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파이스트 판결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되자 DB 특성에 적합한 추가적인 보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EU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채택은 미국내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추가적인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진하였다. 비록 파기되었지만 1996년에는 '데이터베이스 투자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적 행위금지법안(HR3531)'이 제104회기 의회에 제출된 바 있고, 1997년에는 상원의원 Hatch의 요청에 의해 저작권청이 데이터베이스 이해당사자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종합 요약하는 연구 보고서(U.S. Copyright Office 1997)를 제작, 발표하였다.

한편 이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97년 10월에 '정보 수집물 침해 방지법안(HR2652)'이 제105회기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1996년 HR3531법안이 배타적인 독점권 형식의 특별권(*sui generis right*)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HR2652는 부정경쟁상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이론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Deutsch 1998). 특별권이 손해 여부에 상관없이 인정되는 배타적인 권리인 반면, 부정이용 이론은 침해받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상업적으로 시장에 해를 끼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사후적인 권한을 준다. 이 법안의 제1002조에 따르면 '타인이나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한 승계인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시장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정보 수집물을 구체화하고 있고 그 타인이나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한 승계인에 의해 제공되거나 제공되도록 의도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자금 혹은 기타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타인에 의해 수집·구성되거나 유지되는 정보 수집물의 전부 혹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것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부분을 추출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제1206조에 정해진 구제 조치에 대해 그 타인이나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한 승계인에게 책임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채택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정보 독점 등에 대한 우려를 무마시키기 위해 제한 규정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비영리적인 교육/과학/조사를 위한 이용에 대해서는 허용한 점, 뉴스 보도가 유일한 목적일 경우 허용한 점, 정부 기관에 의한 정보 수집물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점, 타법 및 개별적인 거래 규제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점 등이 그 예이다.

이 법안은 교육, 과학, 조사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 목적을 위한 정보에의 계속적인 접근 가능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정보 수집물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하도록 시도되었다고 평가되었다(Deutsch 1998). 이 법안은 1998년 5월에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이후 상원의 인가를 받지 못한 채 제105회기 의회가 종료됨으로써 결국 파기되었다. 비록 이 법안이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나 HR2652는 부정경쟁이론을 최초로 도입한 법안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 방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제106회기 의회의 주된 논쟁거리로 대두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3.3 일본

일본은 저작권법에 별도 규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 또는 배열에 창작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타국의 편집저작물에 의한 보호와 유사하며, 일본 역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명확히 단언하기는 어려우

나, 다음 3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저작권법 규정으로는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WIPO 1998). 첫째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둘째는 창작성을 갖춘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이 없는 부분의 이용, 셋째는 체계적인 구성 혹은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체계적인 구성 또는 배열을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유럽, 미국 등의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입법화 동향은 일본내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문화청의 저작권심의회 및 통상산업성의 산업기반심의회와 같은 몇몇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의 명확화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데이터베이스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미흡성은 세계 각국이 공감하고 있고, 각국이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은 물론 WIPO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제적인 법적 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성패는 정보 사회에서 주체적인 지위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정보 산업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규모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뒤져 있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집약적인 육성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보호 방안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데이터베이스보호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중 약 32%가 무단 복제 등의 데이터베이스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침해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86%가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침해 및 그 보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조사 대상 업체 중 약 40% 정도가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투자 의욕이 저하된다고 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증명하고 있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더 이상 선진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내적으로도 공정한 데이터베이스 산업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 방안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 및 실천이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이익 증진에 뒷받침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선진국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연구되어야 할 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4.1 입법 형식

현행 저작권법상의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창작성 요건에 의해서도 사법부의 적절한 운용에 의해 충분히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의 관련 학자들은 현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미흡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보호법 마련을 위한 입법 형식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크게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한 보완 방법(김문환 1998, 25; 이상정 1998, 22)과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의한 방법(양유석 1997, 92-96)이 제기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추가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투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어느 쪽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 쉽게 결론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 개정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한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의 기본 성격상 다음과 같은 한계가 예상된다. 첫째,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단지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나 특성을 제대로 반영시키기가 어렵다(양유석 1997, 94). 둘째, 데이터베이스에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외적인 조항의 신설이 불가피한데, 타 저작물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 저작권법의 체제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양유석 1997, 94). 셋째, 법

개정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관련 규정을 삽입함과 동시에 기존 저작권법상의 관련 조문들도 함께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양유석 1997, 94). 넷째, 데이터베이스는 과학, 기술, 산업의 산물로서 저작자의 창작성, 독창성을 기본 보호 근거로 하고 있는 저작권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호법 마련의 취지가 제작자의 인적, 재정적, 시간적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 만큼 이는 저작자의 지적재산 보호가 목적인 저작권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 산업법상 부정경쟁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이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별도법 마련을 지지하는 이유는 첫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적합하고 구체적인 보호법 마련이 가능하며, 법 마련에 소요되는 노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 둘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제작자의 투자 보호에 있는 만큼 독창성을 보호 근거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 보다는 제작자의 투자 보호 및 부정 경쟁 금지를 반영하는 별도법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점 셋째, 열악한 상태의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별도법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집중적인 육성책의 구심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유통이 일반적인 저작물과 달리 정보화 촉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양유석 1997, 94) 저작권의 틀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법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만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다섯째,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활동 중인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

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한다면 별도 보호법을 마련함으로써 부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록, 심의 기구 운영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4.2 보호 형태

전세계적으로 저작권법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권리 형태로는 크게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특별권과 같은 배타적인 독점권의 형태와 부정경쟁법상의 부정 이용 금지 형태가 대비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배타적 독점권을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의 과도한 권리 부여는 정보의 독점을 야기하고 원활한 정보의 유통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제작자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정규적으로 갱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무기한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고, 공공의 정보가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될 위험이 크며, 또한 어느 정도의 정보 추출 및 이용이 실질적인 추출·이용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보 이용자의 합법적인 정보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용, 즉 도서관, 과학 조사,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U.S. Copyright Office 1997, 88-90).

한편 부정경쟁법상의 보호 방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첫째, 부정경쟁법은 직접적인 경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경쟁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무단 복제등의 침해에 대해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동일

한 지역 내에서라도 무단복제된 데이터베이스와 무단복제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차별화된 시장에서 판매, 이용되고 있다면 비록 무단복제되었을지라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판매 등 시장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비록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했을지라도 최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 직접적인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WIPO 1998).

이처럼 보호 형태에 따라 제각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둘의 장단점을 적절히 취합함으로써 새로운 보호의 형태를 제시한 것이 1998년 미국의 HR2652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수집물의 전부 혹은 실질적인 부분을 추출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타인의 투자를 부정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어서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상의 보호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단 EU 데이터베이스 지침과의 차이점은 비록 부정이용행위를 했더라도 금지 대상을 타인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시장에 해를 끼칠 목적인 경우만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즉 HR2652는 EU의 보호 내용을 따르되 부정경쟁법의 이론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이 법안이 당 회기에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 외에 별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정보 수집, 가공, 축적 등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된 노력, 비용 등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 투자에 대한 보호는 기술의 발명, 혹은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타인의

정보 혹은 저작물을 수집, 배열하고 있을 뿐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그 소재 정보 각각의 이용에 대해서까지 강력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정보 그 자체에 대해서까지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그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상업적 경쟁 질서를 규율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법의 법리와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배타적인 독점권을 인정하는 특별권과 같은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기 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를 무단 이용하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시장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부정경쟁법상의 이론에 의한 접근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단, 시장에 해를 끼치는 지 여부의 입증은 자칫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의 무단 이용이 있을 경우 시장에 해를 끼칠 의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3 보호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및 보호 요건은 보호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상물의 보호 대상이 결정되고, 보호 요건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화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저장 매체와 이용 방법, 구성 내용(문자, 수치, 기호, 음성, 영상 등)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의 규정이 매우 어렵다.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미국의 HR3531·HR2652, 영국의 1997 데이터베이스 규칙, 독일의 개정 저작권법상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 정의의 검토하여 보면, 약간의 어구상의 차이는 있지만 i) 체계적 또는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집, 배열되어 있고 ii)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인 수단 상관없이 기타 수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iii)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문자, 수치, 기호, 음성, 영상 등에 상관없이 저작물,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가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단 첫째, 셋째 요건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두번째 요건인 비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정보 수집물까지도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WIPO 1998).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한 것은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가 제기된 것 역시 컴퓨터, 디지털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복제의 용이함, 신속성 등의 성질에 의해 무단 복제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데이터베이스는 전자적인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정보 수집물까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하였다. 즉 비전자적인 경우까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킬 경우, 기존의 비전자적인 방식의 편집저작물까지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되는데, 이는 이미 널리 퍼져있는 기존의 법적인 관행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컴퓨터, 통신의 발전에 따른 정보의 무단 복제의 신속·용이함에 있으므로 컴퓨터 및 통신 등의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WIPO 1998).

그러나 이와같이 비전자적인 경우를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법적 관행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은 공정한 정보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록 전자적, 비전자적이라는 형태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정보의 수집, 배열, 제공, 이용이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들이 비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지 못할 근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동일한 정도의 투자를 기울였는데도 전자적, 비전자적이라는 제작 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보호의 정도가 차별화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스캐너와 같은 기기의 발달로 아날로그 자료의 복제 역시 용이해지고 있다(U.S. Copyright Office 1997)는 점은 비전자적인 경우를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더해준다. 따라서 각국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정의의 규정은 그대로 인용하여 활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EU 지침이나 기타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및 보호법안 모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요건으로 '실질적인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외에 데이터베이스를

추가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단 복제 행위로부터 제작자의 인적, 시간적, 재정적 투자를 보호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투자가 제공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적'이란 용어는 그 추상성에 의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즉 어느 정도의 투자를 '실질적'이라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보호가치가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법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용어라고 인정되어 왔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근거가 제작자의 투자 보호인 만큼, 무단 복제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작자의 이익에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실질적인 투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4 권리 내용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대상을 무엇으로 하는가, 혹은 제3자의 어떠한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추출하거나 재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은 데이터베이스 규칙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혹은 실질적인 부분을 추출 혹은 재이용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EU 지침상의 권리 내용 및 어구를 그대로

로 따르고 있다. 아직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안들도 추출·재이용의 개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독일은 저작권법 개정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질적 혹은 양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복제, 배포, 그리고 공중 전달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저작권법내에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저작권법상의 권리(복제권, 배포권, 공중전달권)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 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을 따르는 동시에 기타 저작물과 균형을 맞추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권리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점은 데이터베이스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명확하고 포괄적인 이용 규제가 가능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U는 '추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어떠한 수단이나 형식으로든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재이용'에 대해서는 '복제물의 배포, 대여, 온라인 또는 기타 형식의 송신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모든 형식을 말한다'고 하였다. '추출'과 '재이용'의 개념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망라할 수 있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며 포괄적인 규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측면에서 추출과 재이용에 대한 금지 권한 부여는 상당히 유리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추출·재이용에 대한 금지 권한 부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입장도 있다. 특히

‘추출’ 행위에 대한 금지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필연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추출하여 사용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마다 일일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사용의 편의성 및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부분의 추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차단 혹은 적절한 이용료의 부과, 그리고 개별적인 계약 등에 의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WIPO 1998).

그러나 비록 재이용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는으나 추출에 의한 행위 자체로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출 행위에 의한 결과 차후 재이용의 가능성을 제공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추출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과학 조사, 교육적 목적을 위한 사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용의 경우는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부차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보호 권리의 내용을 논함에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를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추출, 이용이라고 판단할 것인가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이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실질적인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안의 다양성을 감안한다면 명확한 기준 제시의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추출·재이용하여도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제작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지 않는 정도라면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5 보호 제한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역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와 공공의 목적에 이익이 되는 이용자와의 권리 및 이익의 균형·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한 적절한 제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권리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은 자칫 권리의 남용으로 인해 정당한 이용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EU 지침상에서는 제한 사항을 i) 비전자식 데이터베이스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추출하는 경우 ii) 출처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비영리적인 목적임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지 교육 또는 과학적인 연구를 예증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추출하는 경우 iii) 공공의 안전이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추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독일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보호법 역시 어구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내용면에서 EU 지침과 크게 다를바 없다.

이같은 제한 규정은 기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과 관련한 제한 규정들과 비교할 때 다소 범위가 좁게 규정된 것이다. 즉 뉴스 보도의 경우나 도서관 예외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타 저작권자들 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청이 개최한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루트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추가적인 보호권 부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정보 이용 장애 문제에 대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따라서 보호 권리에 대한 제한 사항 규정 마련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좀 더 구체적이며 넓은 범위의 제한규정을 제시하는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즉 HR2652 법안은 EU에서 규정하는 제한 사항 외에 검증을 위한 정보의 이용 및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뉴스 보도의 경우를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각 법률상의 정보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정보와 관계한 어떠한 다른 권리나 의무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의 이용 촉진과의 균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권리의 지나친 강화는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시장의 경직을 초래하며, 이용에 대한 지나친 방임은 제작자의 투자 의욕을 저해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한다. 따라서 권리 보호와 이용에 대한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부여된 권리 부여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용, 유통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우려 및 반대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을 장려하여야 하는 공중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의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며, 단순히 직관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하여 업

계 환경에 어울리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6 보호 기간

보호 기간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첫째, 보호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와 둘째, 추가·갱신에 의해 변경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기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보호 기간의 산정은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용인함으로써 적절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기에 적합할 만큼 지속되어야 한다. 자칫 지나친 보호는 정보 독점 및 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 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 각각 사업적인 환경이 다르고 투자 회수 기간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보호 기간을 산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국제적인 조화를 고려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는 동시에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 기준 마련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한 조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U 및 최근 미국의 입장은 15년의 보호 기간을 채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호 기간의 산정보다도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가·갱신에 의해 변경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이다.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등 데이터베이스 보호 관련법 및 법안에서는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투자라고 인정될 만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기간을 무기한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의 독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취지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실질적인 투자를 보호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과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갱신을 위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투자 및 노력이 요청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배제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갱신된 데이터베이스의 추가적인 보호의 적법성을 문제삼기 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갱신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법(안)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투자'라고 인정될 만큼의 변경'을 새로운 보호 기간 부여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실질적인 새로운 투자' 역시 용어의 추상성으로 인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줄 수는 없으나, 보호 기간 확장을 위한 단순한 정도의 변경을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 여겨진다.

4.7 공공기관 제작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하여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공공기관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취급 문제이다. 최근 정보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최대의 정보 보유자인 공공기관의 역할 및 권리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은 그들이 보유한 각종 정보에 대해 자체적으로 혹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다방면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늘어나게 되면 당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 및 산업상의 재이용 요청이 확대될 것인데, 국내법상 공공기관 제작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과정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저작권법은 판례, 법령 등 기타 몇가지 사유만을 저작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제7조 제2호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규정에 의해 제한 사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상당수의 공공기관 저작물이 저작권의 제한 사유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자체 제작한 저작물(데이터베이스 포함)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는다면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민간과 비교하여 정보를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근거로 자체 보유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익 사업화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민간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한 민간업체와 배타적인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간접적인 독점행위 역시 공공기관의 공익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난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공기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체 제작한 저작물의 수익 사업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저작물의 제작, 갱신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반면 선진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정부가 보유한 저작물의 성격 규명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 이용 장려 정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여 이미 1895년부터 연방정부 기관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저작권법상에 명문으로 규정해 오고 있다(Gellman 1996). 더욱이 HR2652 법안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제한 규정에 의하면 연방정부 기관 뿐 아니라 주, 지방 정부 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철저히 공공기관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정책을 고수하려는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미국과 달리 영국의 경우는 왕실·의회에 대한 저작권(crown copyright) 부여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1997년 데이터베이스 규칙에서도 왕실·의회에 데이터베이스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본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98). 그러나 왕실·의회의 저작권 인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찬반의 주장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찬성하는 측의 주장 이유로는 i) 지금까지 징수해오던 저작물 판매, 로얄티 등의 수익에 대한 감소는 기관의 능력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 ii) 정보 수집 등에 요청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필연적임 iii) 저작권의 인정은 정보의 명확성, 갱신을 보장하는 수단임 iv) 저작권 불인정에 따른 동기의 저하로 인해 새로운 정보의 생산, 기술 개발 등이 저하될 등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 따르면 i)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이용은 자유이용이어야 한다는 점

ii) 민간과 경쟁하는 것은 정부 기관의 몫이 아니라는 점 iii) 민간에 의한 정보에 대한 부가 가치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용이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 iv)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필수적인 전자통신 시대에 공공기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강화는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98).

최근 국내에서도 민간의 공공기관 보유 정보에 대한 이용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국가 역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민간 이양을 정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이용 단계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저작권 문제, 이용 기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아무리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민간에 의한 정보 이양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입장 여하에 따라 바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크다.

특히 앞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면 공공기관 정보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공공기관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재이용할 수 있는가 여부,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가 여부, 권리를 침해했는가 여부, 이용 조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후에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을 마련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권의 인정 여부는 반드시 논의되어 심사숙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단,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 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저작물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

호 및 이용 정책의 기본 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록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이 옳다고 결론 내려지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을 견제하고 민간의 공공기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이용 지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창작성이나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과학, 기술, 산업의 산물인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수정, 보완도 없이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이며, 이는 일찌기 예견된 당연한 결과였다.

EU 지침이나 미국의 법안이 저작권의 개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특별권을 제정하거나 부정경쟁의 이론을 도입하려 하는 움직임은 보이는 이유도 저작권법의 개념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법적인 보호는 그 제작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지속적인 투자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의 공정한 정보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상반된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데이터베이스 이용료를 지출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정책이 오히려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내적으로 공정한 정보 거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법적 보호 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내에서도 저작권법의 현행 보호 규정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보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단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인가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신중히 도출되어야 할 것이나,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상의 보호 내용을 참조하면서 부정경쟁법상의 부정경쟁 행위 규제 논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정보의 추출 및 재이용 행위에 대한 금지권한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하되 그 대상을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시장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정보 독점, 이용 규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저작물의 보호와 같은 창작성 등의 지적인 산물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에 대한 보호인 점을 고려할 때 상업적 경쟁질서를 규율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법의 법리 적용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합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서 보호 대상, 권한 내용, 제한 사유, 보호 기간 등 논의할 사항이 많다. 향후 관련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방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국외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동향을 주의깊게 살피고 국제적인 법적 통일을 위한 논의

의 장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문환. 1998.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률 일반.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연구회 보고서』.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박은아. 1997.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발효. 『정보통신정책』. [online]. [cited 1999.3.30]. <<http://www/kisdi.re.kr>>.
- 성진영. 1994.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공개. 『정보통신정책 ISSUE』. [online]. [cited 1999.3.30]. <<http://www/kisdi.re.kr>>.
- 신각철. 1996. 데이터베이스 원시자료의 가공, 배열, 축적 방법. 『데이터베이스월드』, 통권 43호:61-63.
- 양영준. 1990. 국내법 제도하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판례.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공개 토론회』, 1990년 8월 29일. [서울: 한국무역협회].
- 양유석. 1997. 『외국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데이터베이스 보호 관련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이상정. 1997. 『저작권법 개설』. 서울: 화산문화.
- 이상정. 1998.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 41호:14-23.
- 조소연. 1998. NBA 경기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NBA 재산권에 대한 침해인가. 『데이터베이스월드』, 통권65호:56-62.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시급. 『데이터베이스월드』, 통권68호: 42-43.
- Deutsch, Andrew L. 1998.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Extra [online]. <<http://www.ljx.com/copyright/0427hrd base.html>>.
- EC. 1996.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O.J. (L 77/20) [Hereinafter Database Directive]. [online]. [cited1998.12.21]. <<http://www2.echo.lu/legal/en/ipr/database/database.html>>.
- Gellman, Robert. 1996. "The American model of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public information".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Conference, 1996.6.27-28. [Stockholm] [online]. <<http://www2.echo.lu/legal/stockholm/en/gellman.html>>.
-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98. Crown Copyright in the onformation Age.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 Office [online]. [cited 1998.12.21].
<<http://www.hmso.gov.uk/document/cfuture.htm>>.
- U.S. Copyright Office. 1997. U.S. Copyright Office Report on Legal Protection for Databases. U.S. Copyright Office.
- WIPO. 1998. SCCR/1/INF/2.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WIPO [online]. [cited 1999.2.3]. <http://www.wipo.int/eng/meetings/1998/sccr_98/index.htm>.